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1,967,606	11,459,028
일반회계	339,512,187	10,185,366
특별회계	42,455,419	1,273,663
공기업특별회계	13,829,074	414,87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829,074	414,872
기타특별회계	28,626,345	858,790
수질개선 특별회계	10,826,316	324,7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002,600	30,078
주택사업 특별회계	4,557,014	136,710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06,228	24,187
자활기금 특별회계	1,908,207	57,246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8,406,800	252,204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76,097	26,283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10,000	6,300
기반시설 특별회계	33,083	992

제 2 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및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38,74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